

### 3.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法律 施行規則中 改正令

건설교통부령 제106호 1997. 7. 11

####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

개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종료시점지가산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함.

#### 주요내용

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의 3(지가산정방법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·군·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의 3(지가산정방법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의 3(지가산정방법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·군·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.</p>

주택회보